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05월 30일
4. 회부일자 : 2025년 05월 30일

II. 제안이유

-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총정원 변동 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
 -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11명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개정('25.6.2.)에 따라 [별표 5] 중 '기술서기관' 을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
-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에 국장급(3급) 직급을 신설하고, 기술서기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며, 전공자율 선택제 확대 및 첨단분야 학과의 증원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됨.

2. 시의회사무처 3급 신설(안 별표4)

-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사무처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3조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사무처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급 기준을 정하면서 서울시는 1급, 부산시는 2급,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규모에 따라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의회사무처장으로 두도록 하고, 그 하위직급으로 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지 28년¹⁾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이 92%(223명→429명)나 증가했음에도 그 관리를 위한 인력은 여전히 변동이 없어 사무처장의 과도한 통솔범위²⁾와

1)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은 1997년(1997.2.4.)부터임.

불안정한 조직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 더욱이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및 그 하위직급의 구조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3급 이상으로의 승진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우수 인력의 이탈과 인사적체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정부(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³⁾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2025년 5월 20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3급을, 그 외 시·도의회는 복수직급(3·4급)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⁴⁾.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러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 사무처에 3급 직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퇴직한 관리운영직(8급)의 정원을 활용·상계함에 따라 시의회사무처(429명) 및 서울시의 총정원(19,171명)에 변동은 없음.

현행	개정안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제1항 관련)

- 2) 서울시 실장급(1급) 공무원은 하부조직으로 2~3명의 국장(3급)을 두고 최소 6개~11개 과(담당관)를 통솔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장은 하부조직으로 국장 없이 7개 과(담당관)와 12개 전문위원실을 통솔함.
-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 및 사무배분,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대한 국가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각 시·도지사로 구성됨.
- 4) 이외에도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상한규정이 상향됨(의원 131명 이상일 경우 전문위원 24명 이내 → 의원 151명 이상일 경우 전문위원 26명 이내).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26	16		1	9	
(생략)						
5급 이하 소계	10,205					
(생략)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689					
(생략)						
3급	27	16		1	9	
(생략)						
5급 이하 소계	10,193					
(생략)						

- 참고로 동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3급 직급의 명칭을 ‘의정국장’ 으로 하고, 의정국을 설치하여 전문위원실을 제외한 7개 부서⁵⁾를 통솔할 계획임.

3.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증원(안 제2조 및 안 별표4)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의 전공자율선택제의 연차별 확대와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확대에 대응하고자 전임교원(교수) 11명을 증원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20명	1. ----- -----: 10,50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54명	3. ----- : 565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5)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인사담당관, 현장민원담당관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제1항 관련)

구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교수 등	476			476		
(생략)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제1항 관련)

구분	계	분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생략)						
교수 등	487			487		
(생략)						

- 먼저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는 정부(교육부)의 2025학년도 대학교 전공자율선택 선발인원 확대 시책⁶⁾에 따른 것으로, 시립대는 자율전공학부 입학정원을 2026년까지 156명으로 확대할 예정임⁷⁾.
-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시립대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신청 선호도가 높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와 컴퓨터과학부⁸⁾의 전임교수를 각각 3명과 2명씩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첨단분야 학과 입학정원 확대는 정부가 2023년 2월에 발표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대학별 5대 첨단분야⁹⁾ 학과 증원 심사에서 시립대는 5개 학과 155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나 4개 학과에서 55명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대는 인공지능학과에서 3명, 지능형반도체학과에서 1명, 신소재공학과에서 2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6)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학생들이 기존 학과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전공학부의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2만 8,011명이 증가한 3만 7,935명으로 확대함.

7) 2024년 30명, 2025년 78명, 2026년 156명

8) 시립대 자율전공학부 재학생의 전공선택시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선호도는 23.3%이며, 컴퓨터과학부 선호도는 10%임.

9) 정부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첨단분야를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Aerospace/Mobility), ▶바이오 헬스(Bio Health), ▶첨단부품·소재(Component), ▶디지털(Digital), ▶환경·에너지(Eco/Energy)의 5대 분야로 재정립함.

- 이처럼 시립대의 전임교원 증원은 정부정책에 따른 입학정원 확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학사운영과 대학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서울시의 유휴 정원¹⁰⁾을 활용·상계하여 총정원의 증가 없이 시립대의 전임교원만 확대하였음.
- 다만 시립대는 그동안 전임교원의 정원이 증원된 이후에도 개별 학과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신규 임용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장기간 현원이 충원되지 않는 학과의 정원은 재배치 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요구됨.

4. 기술직렬 명칭 변경 반영(안 별표 5)

- 정부는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2024.12.31.)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표를 명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였음(2025.6.2.).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5] ----- -----

10) 서울시 집행기관 소속으로 퇴직한 관리운영직 7명, 시설관리직 4명의 정원(6급 4명, 7급 4명, 8급 3명)을 활용함.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생략)						
소방정	32	3		29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생략)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현행과 같음)						
소방정	(현행과 같음)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현행과 같음)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 5 중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을 ‘소방정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5.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사무처 3급 신설 및 시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위직급 정원 12명을 상계하고, 직급별 정원표에서 ‘기술서기관’ 의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른 서울시 인건비는 인력운영비와 기타 운영비를 합쳐 총 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게 되며, 향후 5년간 총 15억 5천 1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